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교육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현행 외국박사학위 신고와 관련하여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
외국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의 신고에 관한 규칙의 위임사항
등을 검토하여 학위 신고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외국박사학위 신고대상자 및 제출서류 규정(안 제17조 개정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협의 예정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1. 11. 25. ~ 2022. 1. 4.) 예정

3) 행정규제 : 해당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7조(외국박사학위의 신고)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국한 날(귀국 후에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학위를 받은 날) 또는 대한민국 국적 취득일부터 6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(외국박사학위의 신고) 외 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 국한 날(귀국후에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학위를 받은 <u>날</u>) <u>부터 6월이내에 당해 학위논문</u> <u>또는 학위논문이 게재된 출판물</u> <u>1부를</u>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 게 신고하여야 한다.	제17조(외국박사학위의 신고) 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날</u>) <u>또는 대한민국 국적 취득일부터</u> <u>6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</u> <u>는 서류</u> ----- -----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교육부 학술진흥과	
연 락 처	(044) 203 - 6852